

## (2017학년도) 의료공간디자인학과 교육과정 일부 개정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<p>■ <b>학과 내규</b></p> <p>1. 학칙 제41조(졸업과 학위), 동 시행세칙 제74조의 2(졸업논문 등)에 의거 졸업작품을 제출,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.</p> <p>2. 졸업작품의 제출 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</p> <p>가. 학과에서 제시하는 설계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</p> <p>나. 동일한 전공선택트랙(의료공간디자인 혹은 의료공간관리 중 택일)으로 9학점 이상 이수자</p>	<p>■ <b>학과 내규</b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졸업작품의 제출 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</p> <p>가. 학과에서 제시하는 설계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<b>(단, 편입생은 제외)</b></p> <p><b>&lt;삭 제&gt;</b></p>